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4. 7. 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7월 1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7월 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05회 제1차정례회 제6차위원회 (2004. 7. 6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 영 남

가. 제안이유

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,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부서로 2004. 6. 30일까지 존속 하도록 되어있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주민불편 사항 최소화를 위해 존속기한을 2005. 6.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0 구본청 기구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. 6. 30일에서 2005. 6. 30일까지 1년 연장함.(안 조례 제473호 부칙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0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9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동 지침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473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4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음.

0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0 질의요지(남두희 위원) :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을 위하여 1년을 연장하는 것인가?

0 답변요지(김영남 총무과장) : 예, 그렇습니다.

0 질의요지(남두희 위원) :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2년인데 2005년까지 유효한 것인가?

0 답변요지(김영남 총무과장) :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별개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4. 7. 1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,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부서로 2004. 6.30일까지 존속하도록 되어있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주민불편 사항 최소화를 위해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 개정골자

구본청 기구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함.(안 조례 제473호 부칙 제4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" 없 음 "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지방자치법(2004. 1.29 법률 제7128호) 제102조
- (2)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(2003.12.30 대통령령 제18191호) 제6조 및 제10조
- (3)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
(2003. 5. 1 행정자치부령 제200호)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협 의 : 서울특별시 승인 완료(조직담당관-4393, 2004. 6.29)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 타

- (1) 입법예고 :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함.
- (2)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
- (3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473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조중 “2004년 6월 30일”을 “2005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 칙(2000.12.5 조례 제473호) 제1조 내지 제3조(생략) 제4조(한시기구)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구본청 지구중 주민 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	부 칙(2000.12.5 조례 제473호) 제1조 내지 제3조(현행과 같음) 제4조(한시기구) _____ _____2005년 6월 30일-----